

# 신·구 조문 대비표

(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·배포·활용 기준 개정안)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5조(수문자료자체평가의 실시)</b></p> <p>①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(이하 “자체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위해 공인신청항목에 대한 수문조사보고서를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<u>20일</u>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부터 별지 <u>제11호</u>까지의 서식의 공인신청항목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의견서를 근거로 별지 <u>제12호</u>부터 별지 <u>제21호</u>까지의 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5조(수문자료자체평가의 실시)</b>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10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제12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u>제13호</u>----- <u>제23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<u>공인신청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의견서 및 평가결과서에 따라 제2항의 수문조사보고서를 수정·보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공인 신청)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수문조사보고서</li> <li>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</li> <li>제5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서</li> </ol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,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공인 신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---- -----</li> <li>----- -----</li> <li>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수문조사보고서</li> <li>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 조치보고서</li> <li>제12조제2항의 한국수문조사연보 발간을 위한 전산자료</li> </ol>
<p>제8조(심의위원회의 개최)</p> <p>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8조(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)</p> <p>① ----- ----- -.</p> <p>② <u>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심의위원회는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문자료의 공인 여부를 심의한다.</p> <p>④ 심의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11조(수문자료의 공인)</b>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14조(재검토 기한)</b> 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</p>	<p><u>한 후 수정·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수정·보완 요청을 받은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수정·보완한 부분에 대하여 제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고서 또는 전산자료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----- 제4항----- ----- 제25호----- ----- -----.</p> <p><b>제11조(수문자료의 공인)</b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6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b>제14조(재검토 기한)</b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<u>2014년 7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16년</u> <u>4월 30일</u>-----.</p>